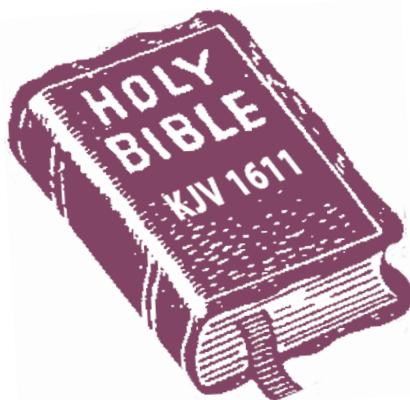


우리의 믿음과 약속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마16:18)

전문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신약 교회들의 특징을 따라 모든 일을 합당하고 질서 있게 수행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는 가운데 언제라도 서로를 도와주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며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합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헌법 곧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키기 원해 ‘우리의 믿음과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요약 · 정리한 헌법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1조: 명칭과 소재지 및 목적

제1항 – 명칭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로 구성된 본 회중의 이름은 사랑침례 교회라 한다.

제2항 – 소재지

본 교회는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77, 1203호(논현동, 에코타워 12층)에 소재지를 둔다.

제3항 – 목적

(가) 신약 성경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교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 가지 성경적 사역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

(나) 복음 사역을 위해 남자들에게 안수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 구원받게 하며, 성경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며 하나님의 규례들을 지키게 하고,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의 선교 사역을 유지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며 세계 선교사역을 돋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본 교회가 정한 다른 사역들을 수행하는 것

(다) 위의 두 목적을 올바로 이루기 위해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널리 알리고 가르치며 지키는 것

제2조: 믿음 진술과 계약

제1항 – 믿음 진술

A. 성경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들(단어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성리로 보존되어 오류가 전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믿는다. 또한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English King James Bible)이 지금 이 시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완전한 성경’이라고 믿는다. 또한 그 성경을 우리말로 신실하게 번역한 킹제임스 흄정역 성경이 ‘바른 성경, 바른 믿음, 바른 구원, 바른 성화,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충분한 성경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암송하고 설교할 때에 ‘우리말 킹제임스 흄정역 성경’을 사용한다.

B. 하나님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이 유일하고 살아 계신 참 하나님임을 믿는다(출20:2-3; 고전8:6). 그분은 본질상 영원히 불변하고 무한한 권능과 지혜와 거룩함과 의와 경건과 진리를 갖춘 영이시며(요4:24; 계4:11) 만물을 창조하고 심판하시는 분이다(창1:1; 요1:3; 골1:15-16).

우리는 이 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라는 ‘뚜렷이 구분된 세 인격체’ 즉 삼위일체로 존재함을 믿는다(마28:18-19; 요1:14; 고후13:14; 히1:1-3; 요일5:7-8). 이 세 인격체는 한 하나님이며 정확하게 동일한 본성과 속성과 영원성과 완전성을 지닌다(막12:29; 행5:3-4; 계1:4-6).

C.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시고 예언을 성취하시며 잃어버린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믿는다(창3:15; 사7:14).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에 의해 수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마1:18-25; 뉘1:35).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시다(요1:14, 18; 히4:15).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극진히 사랑하사 아버지의 뜻을 자원하여 받아들이셨고 자신을 거룩한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자신의 피로 온 세상의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제거하셨다(요1:29). 그분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홀로 짊어지심으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롬 3:25-26; 벤전3:18; 고후5:14; 히10:5-14).

D.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같이 거룩한 인격체이시며 그 두 분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셨음을 믿는다(창1:1-3).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오순절 이후부터 모든 신자들 안에 거하신다.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모든 권능의 원천이시며 그분 안에서만 참된 경배와 섬김이 이루어진다. 그분은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며 성도들 중 가장 연약한 자도 무시하지 않으신다(요14:16-17; 16:7; 고전6:19; 앱2:22). 성령님은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을 증언하신다.

E. 사탄과 마귀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을 수없이 많이 창조하셨다고 믿는다. 그중 하나인 ‘루시퍼 즉 아침의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으나 교만으로 죄를 지어 사탄이 되었다(사14:12-17;겔28:11-19). 루시퍼가 타락할 때 많은 천사의 무리가 그를 따라 타락하여 마귀들이 되어 사탄의 대리자요, 조력자로서 악한 목적을 성취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 한편 노아 시대에 자기들의 신분을 벗어나서 여자들을 취해 거인들을 생산한 타락한 천사들(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존하는 사슬에 묶여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서 지낸다(벧후2:4; 유6).

F. 우주의 창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의 실제적인 역사로 믿는다(창1:2; 골1:16-17; 요1:3). 하나님께서는 진화의 과정을 통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의 하루를 6일 동안 사용하셔서 문자 그대로 그 6일 동안에 우주의 모든 만물을 직접 창조하셨다(창1:5, 8, 13, 19, 23, 31).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신 그 일이 성경기록대로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이루어졌으며 그것만 지구와 우주의 참된 역사라고 믿는다.

G. 사람의 창조와 타락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에 의해 생겨났다고 믿는다(창1:1-2, 26-27; 2:7). 모든 인류는 역사적으로 최초의 부모인 아담과 이브에게서 나왔다. 첫 사람은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고(창2:17; 3:6) 그 결과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과 무죄함을 잃어버리고 범법과 죄를 가운데 죽게 되었고(창6:5; 시14:1-3; 51:5; 렘17:9; 요3:6) 마귀의 권세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 같은 영적인 죽음 혹은 사람 본성의 전적인 타락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임하게 되었다. 아담의 자손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의 은혜나 믿음과는 거리가 먼 존재들이다(롬3:10-19; 8:6-7; 앱2:1-3, 8-10; 딤전5:6).

H. 구원과 중생과 성화

우리는 죄인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비롯된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썩지 아니할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레17:11; 벧전1:18-19)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키셨다(갈3:13).

우리는 누구라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믿는다. 이 세상의 행위나 도덕이나 규례 준수 등은 죄인이 하늘나라에 가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사64:6; 요3:5, 18; 갈6:15; 빌3:4-9). 사람이 구원받으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새 본성 곧 성령님께서 심어 주신 새 생명이 그에게 들어오게 된다(요3:16; 행15:11; 벤전1:23; 엡2:8-9).

이런 중생은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요1:12; 3:16, 18, 36; 5:24; 6:29; 행13:39; 16:31; 롬1:16-17; 3:22, 24-26; 4:5; 10:4; 갈3:22). 이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따로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구원은 영원토록 보장된다.

우리는 중생이 일생에 단 한 번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는 평생토록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과정’이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함을 믿는다.

I. 교회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에 수태되어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첫 번째 오순절에 시작되었다고 믿는다(행2:1).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 있는 신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로서 시대와 장소와 교파와 인종과 상관없이 하나이다(고전 12:12-13; 엡1:22-23; 3:1-6; 4:11; 5:23; 골1:18; 행15:13-18).

우리는 지역교회가 침례를 받은 신자들로 구성되며 믿음의 약속과 복음의 교제로 이루어진 조직체라고 믿는다. 지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규례를 준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나 특권을 발휘한다(고전 11:2; 행2:41-42; 20:17-28). 지역교회의 직무 수행자로는 목사와 집사가 있으며 이들의 자격이나 요건과 의무는 성경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딤전3:1-13; 딤1:5-11).

우리는 침례와 주의 만찬이 지역교회에 주어진 유일한 규례라고 믿는다. 침례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일어나신 것처럼 그분을 통해 신자가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으로 일어난 것을 보여 주는 신성하고도 아름다운 복음의 그림이므로(마3:16; 28:18-20; 요3:23; 행8:36-39; 롬6:3-5; 골2:12) 신자를 완전히 물속에 넣는 침수례(immersion)만이 성경적인 침례이다. 또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보여 주고 기념하는 것이지만(행2:41-42; 고전11:23, 28) 그것 자체가 특별한 효능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지역교회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계급 체계를 거부하며 완전히 독립된 자치권을 갖는다. 사랑침례교회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확실하고 상식적인 것 - 모욕, 횡령, 사기 등 - 외에는 세속 법정에서 서로 소송해서는 안 된다(고전6:1). 교회의 참된 사명은 단체적인 사회 활동이 아니라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언하는 것이다(롬15:26).

J. 성경적 분리

우리는 성경적인 분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성경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고후6:14-7:1; 살전1:9-10; 요이1:9-11).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성과 현대주의 교회의 배도, 신복음주의, 은사주의, 부도덕, 성경이 말하는 타협, 그리고 ‘무질서한 형제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해야 한다.

K. 정부

우리는 시민 정부가 인간 사회의 공익과 질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라고 믿는다(출18:21-22). 사형제도는 시민 정부가 지닌 특징 중 하나이다(창9:6; 롬13:3-4). 우리는 행정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며 우리 양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고 정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한다.

L. 휴거와 재림

우리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오셔서 살아 있는 신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휴거를 믿는다(요14:1-3; 살전4:16, 18; 고전 15:42-44, 51-54). 휴거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7년 환난기 전에 발생하지 만(계3:10) 우리 시대에 언제라도 아무 예고 없이 즉시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7년 환난기가 끝난 뒤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큰 영광으로 땅에 다시 임하실 것을 믿는다(단9:2527; 마24:29-31; 24:15-25:46; 행1:9-11; 15:16-17)).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문자 그대로 천년동안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사탄을 묶어 무저갱에 가두실 것이다.

M. 영원 상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과 혼이 곧바로 주님이 계신 하늘에 가며 거기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며 지내게 되리라고 믿는다(눅23:42; 고후5:8; 빌1:23).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의 몸은 부활하여 그의 영과 혼과 결합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과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고전15:51-57). 반면에 불신자가 죽으면 그의 영과 혼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크고 흰 왕좌 심판이 있기까지 지옥에서 정죄와 고통과 비참함을 겪게 될 것이다(눅16:19-26; 계20:11-15). 또한 크고 흰 왕좌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의 몸은 부활하여 그의 영과 혼과 결합하여 불 호수라고 묘사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계 20:11-15). 이 악인들은 결코 소멸되지 않으며 다만 주님의 임재와 권능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원한 파멸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살후1:7-9; 유6-7).

제2항 – 믿음 진술문의 권리

위의 믿음 진술문은 결코 우리 믿음의 전부를 표현한 것이 아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한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근원이지만 우리는 위의 믿음 진술문이

성경의 기본 가르침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믿으며 따라서 모든 회원들에게 구속력이 있음을 믿는다.

제3항 – 교회 계약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여 믿음을 고백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천사들과 이 모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으로 염숙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서로 계약을 맺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리스도인의 사랑 안에서 함께 걸으며; 지식과 성결과 위로로써 본 교회가 발전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며; 본 교회의 번영과 영성을 진척시키며; 본 교회의 예배, 규례, 치리와 교리들을 유지하며; 본 교회를 사람이 만든 어떤 조직이나 제도보다 위에 두어 성스럽게 으뜸으로 여기며; 목회 사역, 교회 경비,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 전파를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현금을 하며; 교회 내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확실하고 상식적인 것 – 모욕, 횡령, 사기 등 – 외에는 어떠한 법적 소송도 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가정과 개인의 기도와 예배를 중단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의 바탕 위에서 믿음으로 양육하며; 우리의 친척, 친구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애쓰며; 세상에서도 주의 깊게 행동하며; 모든 언행은 모범적으로 하여 잡담이나 혐담, 지나친 분노 등을 피하며; 세상적인 모든 것 즉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가 되는 모든 것을 멀리하고 불신자들과 더불어 맹세로 입회하는 비밀조직에 가입하지 않으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한다.

또한 우리는 형제 사랑으로 서로를 살피고 돌보아 주며 권면하고; 기도할 때마다 서로를 기억하며; 병들고 고통당할 때에 서로 위로하고 도우며; 다른 이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언행에 예의를 갖추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간의 호감을 키우고; 우리의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주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모든 일을 금하며; 분내기를 더니 하며 일단 다른 이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는 항상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담스림을 기억하여 지체 없이 화해할 것을 약속한다.

끝으로 우리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가능한 한 속히 본 교회 계약의 정신과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이어갈 수 있는 다른 교회에 연합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복되신 하나님의 왕국을 알리는 일에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데서 자라나 우리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 제물로 주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 교회 정체

본 교회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거듭난 뒤 침례를 받은 신자들로만 이루어진 독립적이고도 자치적인 믿음 조직으로서, 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그분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확장시킨 초대 지역 교회들과 그 교회들의 맥을 따라 세상과 분리하여 온전히 성경 중심으로 믿음을 지킨 ‘성경적 자유 교회’(Biblical Free Churches) 성도들 특히 믿는 자들만을 위한 침례와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주장하여 현대 국가들의 헌법에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게 한 신약교회 선조들의 믿음을 따르고 그들의 모범 된 행실을 이어가는 모임으로서 오직 주 예수님만을 머리로 두는 침례교회이다.

제4조: 회원

제1항 – 회원의 자격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여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본 헌법의 계약을 이해하고 그대로 실행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몇 가지 사례 중 하나를 통하여 본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목사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회원가입서류를 받아 모든 항목을 살핀 뒤 문제가 없으면 회원 후보자를 예배 시간에 회중 앞으로 인도하고 회중의 동의를 얻어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경우 온 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통하여

(나) 성경에 따라 동일한 믿음과 실행을 준수하는 다른 교회로부터의 이적 편지를 통하여

(다) 이미 다른 곳에서 침례를 받은 경우에는 신앙 간증을 통하여

(라) 회중에서 제명된 사람이 과거의 제명 사유에 대해 분명히 회개하며 변화되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를 회중과 목사에게 제시하는 경우 회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원으로 복귀시키는 절차를 통하여

제2항 – 회원의 정의

(가) 교회 회원은 교회 행정상의 목적으로 정규활동회원과 비활동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비활동회원은 질병, 군입대, 외국거주,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회원의 임무 수행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회원을 말한다. 비활동회원은 비활동회원으로 분류된 시점으로부터 교회의 모든 회의나 모임에서 발언권 및 투표권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모든 직무를 상실한다. 또한 위에 명시된 기간에 관계없이 교회 질서를 파괴하는 일로 목사와 집사회의 심사와 결의가 있을 경우에는 비활동회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 비활동회원으로 분류된 후 그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교회 명부에서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기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집사회의 제의에 의해 회중의 모임에서 제명을 결의할 수 있다. 회원이 비활동회원으로 분류되거나 또는 교회 명부에서 제명될 경우 교회는 이를 공식 선언한 후 필요한 경우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3항 – 회원의 제명

(가) 회원은 다음의 경우 교회 명부에서 제명된다; 1) 사망, 2) 회원권 이전, 3) 회중의 출교 결의

(나) 회원의 출교나 제명은 다음의 사유를 근거로 성경적인 절차(마18:15-17; 고전5장)에 따라 처리한다(제6항: 회원의 권리 참조); 1) 하나님께 대한 배도, 2) 교회 내에서 의도적으로 불화 및 파당 조장, 3) 교회 내에서 명백한 이단 교리 전파, 4) 반복해서 부도덕한 행위 실행, 5) 주님과 본 교회의 이름을 크게 실추시키는 모든 언행.

제4항 – 회원의 권리

(가) 본 회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목사의 인도를 받으며 집사회의 조언을 받는 집단으로서 맡은 바 기능을 수행하며 세상적 의미에서의 순수한 민주적 집단과는 차이가 있다. 본 교회의 내부 문제에 대한 결정은 교회가 처리할 사안이며 전적으로 교회의 법규와 처리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목사는 본 교회의 모든 일(제5조 제2항 C ‘목사의 임무’ 참조)을 감독하고 총괄하며 집사회는 목사에게 조언과 도움을 준다. 회원들은 교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개인적으로 목사나 집사회에 제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투표를 통해 교회 운영 및 업무와 관련된 결정에 참여한다. 회원들은 목사와 집사회가 결정한 교회의 중요 지침 및 방향을 확인하고 비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투표한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의 권리는 세상에서 행사하는 권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교회의 덕과 다른 회원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전8:1-2; 12-13; 9:12; 16-19; 10:32-33; 13:4-5; 빌2:1-4). 아울러 모든 회원은 자신의 권리를 제한적으로(고전14:34-35) 그리고 질서를 지키며 온유한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한다(고전14:33; 40).

제5항 – 회원의 임무

본 교회의 회원은 서로가 예수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이며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임을 인식하여 목사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영적인 일에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며; 교회의 모든 회원을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와 대사가 되어 모든 생각과 언행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교회의 복음전파사역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회원 각자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조직적이고도 정기적인 현금 및 다른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전16장, 고후8-9장). 교회는 모든 경우에 어떤 식으로든 결코 현금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6항 – 회원의 권징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인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각종 세상의 악과 영적 누룩의 침입을 막기 위해 주님의 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원의 권징을 실시한다.

(가) 회원 간의 개인적인 문제는 권징 위원회의 공개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최대한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해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유지한다.

(나) 교회 내에서의 규율과 선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목사와 집사회로 구성되는 권징 위원회를 둔다.

(다) 권징 위원회는 본 헌법에 명시된 조항들에서 벗어난 회원의 이단적인 교리와 언행, 위법 등에 관하여 조사, 분석, 결정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회중으로부터 부여받는다.

(라) 회원과 회원 간의 문제를 공적으로 다를 때나 회중과 교회 지도자들 간의 문제를 다를 때는 공히 성경적 절차에 따라 엄정히 판단하여 권징하되 권징을 위해 권징하는 것이 아니라 권징 대상자의 영적 회복과 성장을 목적으로 겸손과 사랑의 영으로 권징한다. 특히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떠나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이단 교리를 가진 자는 엄격히 징계한다.

(마) 회원의 규율과 권징에 관하여 회중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정규활동회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제5조: 교회의 직무 수행자

제1항 – 직무 수행자

(가) 교회의 직무 수행자는 목사와 집사로 구성한다(딤전3장).

(나) 교회의 모든 직원은 교회 헌법과 교회 예배 및 각종 교회 업무와 행사에 충실히 해야 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과 분리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요일 2:15-17).

제2항 – 목사

A. 목사 초청

(1) 담임 목사 -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이후 언급하는 목사는 교회의 담임 목사임
- 가 사임할 경우 회중은 집사회로 하여금 적정 수의 위원을 선임하여 강단 위원회를 구성하게 한다.

(2) 강단 위원회는 본 교회의 목사가 될 적당한 후보자를 발굴 또는 모집하여 회중에게 소개하고 목사가 회중의 투표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설교자 또는 예배 인도자 확보 등 목사가 없는 동안의 공적 예배에 관한 모든 업무를 회중을 대표하여 책임 있게 수행한다.

(3) 목사 선임은 정규활동회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4) 강단 위원회는 회중의 목사 선임 투표 실시 이전에 사례비와 필요 경비 등 목회 활동 지원 전반에 관한 회중의 결의 내용을 모든 목사 후보에게 제시하거나 통보한다.

(5)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회는 목사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목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당한 사례비와 필요 경비를 제공한다.

B. 목사의 자격

(1) 목사의 자격은 딤전3:2-7과 딤1:6-9를 기준으로 삼는다.

(2) 본 교회의 목사는 본 교회 헌법에 명시된 각종 믿음의 교리와 규례, 규정 등을 조건 없이 수용하고 독립침례교회 회중에 의해 독립침례교회 목사로 임명(안수)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C. 목사의 임무

(1) 목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목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일에 매진하여야 하며(행6:4) 본인과 회중을 위해 성경 연구와 훈련을 계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딤전4:13; 15-16; 딤후2:15).

(2) 목사는 교회의 영적 생활과 정기적인 예배, 교육과 양육 그리고 교회의 두 가지 규례인 침례와 주의 만찬 등을 전반적으로 집행하거나 감독한다.

(3) 목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강사를 선별하고 초청하여 본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한다.

(4) 목사는 필요한 경우 회중에 의해 선임되는 교회 직무 수행자들 외에 교회 사무원 등 다른 직원들을 임명할 수 있다.

(5) 목사는 연례 교회 회의에서 교회의 각종 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할 수 있다.

(6) 목사는 필요에 따라 자기와 동역할 부목사(Associate pastor), 조력 목사(Assistant pastor), 조력자(Assistant to pastor, 기존 교회의 전도사), 음악 사역자(Music minister) 등을 둘 수 있다. 부목사나 조력 목사, 조력자, 음악 사역자 등은 목사와 한 팀을 이루어 공동의 비전을 추구할 사람들이므로 회원이 될 자격이 있고 또 직책을 맡는 순간부터 교회 회원이 된다는 조건하에 목사가 선정하여 집사회의 동의를 얻어 목사를 돋게 한다. 이들은 반드시 목사를 돋는 조력자로서 목사의 인도를 받아 목사가 원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목사는 '각 사람이 할 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역이 무난하게 수행되도록 한다. 이런 사역자들의 사례비도 크리스천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합당한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D. 목사의 임기 종료

(1) 목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여 사임할 수 있다. 단 그리스도인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 60일 이전에 서면으로 사임 의사를 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목사가 비도덕적 행위를 하거나 이단 교리를 가르치거나 배도하거나 교회 헌법을 위배한 경우 교회 회중은 정규활동회원의 2/3 출석과 3/4 찬성에 의해 목사를 해임시킬 수 있다.

제3항 – 집사

A. 선임

목사는 집사회와 함께 필요에 따라 집사를 선임한다.

B. 자격

집사의 자격은 딥전3:8-13을 기준으로 삼는다.

C. 임무

집사의 직무는 교회를 다스리는 직무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일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직무이다.

(1) 목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 내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2) 현금의 수납, 지출 등 교회의 재정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한다. 교회 재정은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집사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병든 회원과 고통 받는 회원을 방문하고 격려한다.

(4) 빈궁한 자, 고아, 미망인, 무의탁 노인 등 불우한 회원과 이웃을 돋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5) 교회의 두 가지 규례인 침례와 주의 만찬을 준비하며 목사가 이러한 규례들을 집행하지 못할 사정에 처할 경우 목사를 대신하여 집사나 교회에서 임명한 자가 이를 집행할 수 있다.

D. 집사의 임기 및 종료

(1) 집사는 임기 중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유롭게 사임할 수 있다. 단 그리스도인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 15일 이전에 사임 의사를 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집사가 비도덕적/비상식적 행위를 하거나 이단 교리를 가르치거나 배도하거나

교회 헌법을 위배하거나 주일 오전 및 오후 예배에 모범을 보이지 않는 경우 목사와 집사회는 2/3 이상의 출석과 3/4 이상의 찬성에 의해 집사를 해임시킬 수 있다.

제4항 – 교회 서기

(가) 교회 서기는 집사들 중에서 선임하며 교회의 모든 공식적인 정기 회의와 특별 회의, 각종 행사 및 교회 역사, 회원 명부, 각종 증명서 또는 확인서의 대외 발급 등 교회의 제반 사항에 대한 기록, 보관, 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며 또한 필요한 경우 모든 기록 사본을 목사와 집사회에 제공한다.

(나) 목회자의 목회 활동과 공중예배, 전도집회, 선교대회, 수련회 등 교회의 대내외 모임과 행사에 관한 자료 및 회중을 위한 목회자의 교육자료 등을 수집, 정리, 또는 작성한다.

제5항 – 교회 회계

교회 재무 담당 회계는 집사들 중에서 선임하며 회계는 현금의 수납과 지출, 자금 차입, 자금 운영, 비용 지출 등 교회의 제반 재무회계를 담당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유지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회중에게 월별, 분기별 혹은 연별로 보고한다.

제6항 – 재산 관리 위원회

(가) 재산 관리 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최초에는 목사가 선임하고 차후에는 목사와 집사회가 성도들 중에서 결정한다.

(나) 재산 관리 위원회는 대외적, 법적으로 교회를 대표하여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되 정규활동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집행한다.

(다) 본 교회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할 때에는 재산 관리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7항 – 직무의 기간

(가) 목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무기한이며 집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해마다 의사를 물어 회수에 제한 없이 재임할 수 있다.

(나) 비회원은 본 교회에서 선출직이나 임명직의 어떤 직무도 맡을 수 없다.

제6조: 사역자 임명

본 교회는 성경에 제시된 영적 자질을 갖춘 사역자(목사, 선교사 등) 후보자가 임명(안수)을 신청할 때 성경적인 기준(딤전3:2-7; 디1:6-9)을 근거로 신중하고 엄정하게(딤행5:22) 후보자를 심사 평가하여 회중 명의로 다음과 같은 절차와 규정에 의해 사역자를 임명(안수)할 수 있다.

제1항 – 안수 자격

후보자는 다시 태어나서 침례를 받은 독립 침례 교인으로 본 교회와 동일한 신앙교리 및 교회 규례 등을 조건 없이 믿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2항 – 안수 절차

(가) 목사가 후보자와 면담한 후 후보자에게 안수를 주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후보자의 자격을 심의할 안수 위원회를 소집한다. 안수 위원회는 담임 목사와 집사회 그리고 필요할 경우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 밖의 사역자들로 구성되며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한다.

(나) 안수 위원회가 후보자에게 안수를 주는 일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교회를 대신하여 안수할 수 있다.

(다) 목사와 안수 위원회 의장은 안수식을 예비할 수 있다.

제7조: 교회 규례

본 교회 회중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제정하신 규례가 두 가지 즉 침례와 주의 만찬뿐이며 이 규례들은 성도들이 그 실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지역 교회에게 주신 명령임을 믿는다.

제1항 – 침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침례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간증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요청하고 교회 앞에서 행한다. 침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목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 삼위일체 하나님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한다. 목사가 사정상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집사나 교회가 선임하거나 승인한 형제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제2항 – 주의 만찬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주의 만찬은 두세 달에 한 번 이상 주일 오전 예배에서 목사가 집행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만찬은 성경의 가르침(고전11:27-34)에 따라 모든 회중이 먼저 자신을 살피 후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 목사가 사정상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집사나 교회가 선임하거나 승인한 형제가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제8조: 재정

제1항 – 현금

본 교회의 사역과 프로그램은 성령의 감동과 권면을 받은 전체 회원들의 자발적인

현금에 의해 전적으로 지원되고 집행된다. 우리는 신앙 양심에 반하는 일률적인 서약 현금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믿는다. 또한 우리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재정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수입의 일정액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성경적임을 믿으며 동시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십일조 곧 수입의 십분의 일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현금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본 교회 회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세상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각자가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린 후에(고후8:5)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신의 수입에 비례하게, 남을 먼저 생각하여 희생적인 자세로 현금을 드려야 한다(고전16:1-2; 고후8:1-5, 9:1-15; 마6:21; 히 7:1-17). 건축 현금, 선교 현금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한 특별 현금의 경우에는 목사나 집사회가 회중의 동의를 얻어 역시 자발적으로 현금을 드리게 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한다.

제2항 – 지출

(가) 교회 재정은 집사회에서 총괄하되 교회 건축 등 특별 사유가 있을 경우 목사는 지역 인도자들과 중진 성도들 중에서 몇 사람을 추가할 수 있다. 교회 재정 지출 및 집행 시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교회가 회중 과반수의 결정에 따라 그 지출을 승인하여 집행하고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목사와 집사회가 그 지출을 승인하고 집행한다.

(나) 제5조 5항에 따라 교회의 수입 및 지출은 월별, 분기별, 혹은 연별로 교회 계시판에 공지하고 재정 위원장은 가능한 한 분기별로 회중 앞에서 보고한다.

(다) 초빙 목사, 선교사, 순회 전도자 등이 설교할 때에는 적당한 액수의 사랑의 현금을 교회에서 지출한다. 필요할 경우 그들을 위해 예배 중에 특별 현금을 할 수 있다.

제9조: 모임

제1항 – 예배 모임

본 교회는 성경의 명령(히10:25)에 순종하여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 일요일에 오전 및 오후 예배 그리고 주 중에 기도와 성경 공부를 위한 정기모임을 갖는다. 또 주일에 전 성도가 참여할 수 있는 주일학교를 열 수도 있다. 이 경우 주일학교는 목사와 주일학교 감독자의 주관하에 매 주일 모임을 갖고 회중에게 성경을 가르친다.

제2항 – 회원 총회

교회의 제반 업무를 논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연 1회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는 목사가 진행하며 회의 때에 필요한 경우 재무 회계는 교회 재정 현황을 회중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3항 – 회원 특별 회의

목사나 집사회 혹은 십분의 일 이상의 정규활동회원의 서면 청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 개최 통보는 최소한 1주일 전에 전 회중에게 강단에서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 – 회의 절차

(가) 본 헌법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정기 회의 혹은 특별 회의의 결의는 정규활동회원의 1/2 출석과 1/2 찬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나) 본 교회의 출석 회원 중 만 18세 이상의 정규활동회원은 모든 결의 때에 목회자, 비목회자 구분 없이 공히 1표의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한다.

(다) 모든 회의에서 출석은 위임을 포함한다.

(라) 결의 방법은 육성, 기립, 거수, 무기명 비밀 투표 등 상황에 따라 적정한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마) 모든 회의는 목사가 주재하되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목회자 또는 집사회나 회중이 선임하는 대표가 대신하여 주재한다. 징계나 처우 결정에 관한 회의의 경우에는 그 회의 논의의 대상자는 회의를 주재하거나 참석할 수 없다. 다만 회중이 논의의 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당사자는 지정된 시간에만 한정적으로 참석할 수 있다.

제5항 – 회계 연도

본 교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개정

본 교회 헌법은 정규활동회원의 1/2 이상 참석과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단 교리 진술문 등 기본 신앙 진술에 관한 항목의 개정은 정규활동회원의 3/4 이상 참석과 3/4 이상의 찬성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믿음을 개정할 수 없다.

제11조: 부칙 및 세칙 규정

본 교회 헌법에서 자세히 언급되지 않은 부칙 및 세칙 규정들은 필요할 때마다 목사와 집사회, 위원회 그리고 회중 등 관련 부서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중요 규정은 교회 사이트에 공지한다.

제12조: 해산

본 교회가 해산할 경우 모든 법적인 채무를 완제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일지라도

교회의 재산이나 소유물은 교회 회원에게 개인적으로 분배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교회의 모든 소유물은 본 교회의 헌법의 정신 및 신앙 교리와 일치하는 성경적 단체(들)나 교회(들)에 모두 기부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재산 관리 위원회에 의해 집행된다.

제13조: 양심의 자유

본 교회는 어느 누구에게도 본인의 양심에 반하는 교리나 실행을 강요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교회의 회원이 된 뒤에 교회의 교리나 실행이 양심에 저촉이 되면 누구라도 목사나 목사와 집사 회에 문제를 이야기해서 풀 수 있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 교회 대다수 회중의 양심의 자유와 본인의 양심의 자유를 위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채택

본 교회 헌법은 적법하게 소집된 교회 회의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설명되고 공식 채택되었음을 공포한다.

일 시: 2009년 4월 26일

장 소: 사랑침례교회

회 원: 정동수 목사 포함 창립 회원 36명





CHARITY BAPTIST CHURCH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마16:18)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엡1:23)

끌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빌4:8)

이것들을 중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며,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22:21-22)

KING JAMES BIBLE 1611
